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5. 29 선고 2024가단314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9.

주 문

-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의 2023. 2. 1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3. 2. 22. 접수 제34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의 2023. 2. 1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3. 2. 22. 접수 제34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간이설시의 근거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양시호

별지